



한국스마트협동조합

Social / Mutual ART

예술인 고용보험

2021.09.15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형 이사장

1. 연혁

- 1) 1991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결정
- 2)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 3) 1995년 고용보험 시행
- 4) 1998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 5) 2001년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지급
- 6) 2002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7) 2010년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
- 8) 2012년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 9) 2013년 65세 이상 계속가입자 고용보험 적용
- 10) 2020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11) 2021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일반고용보험의 구성

1. 실업급여(사업자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

- 1) 고용보험료를 일정한 기간동안 납부하고
- 2) 비자발적 실업이면서
-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상태이고
- 4) 채용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전액 사업자 부담)

- 1)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2)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1. 법제정

- 2020년 5월 20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국회통과
- 2020년 6월 9일 공포

2. 시행

- 2020년 12월 10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

3. 집중신고기간 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후 현재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자발적 신고시 사업자 과태료 면제

예술인 고용보험 통계

1. 가입통계
 - 1) 2021년 8월 11일 현재 중복인원 제외 60,905명)
2. 분야별 가입통계
 - 1) 방송연예 (29.3%) 2) 음악 (12.8%) 3) 영화 (12.6%) 4) 연극 (9.7%)
5) 미술 (6.3%) 6) 국악 (4.2%) 7) 문학 (3.5%) 8) 무용 (2.7%) 9) 만화 (2.5%)
3. 연령별 통계
 - 1) 30대 (36.2%) 2) 20대 이하 (29.8%) 3) 40대 (21.2%) 4) 50대 (9.9%) 5) 60대(2.9%)
4. 지역별 통계
 - 1) 서울 (68.5%) 2) 경기 (10.6%) 3) 부산 (2.8%) 4) 경남(2.0%)
5. 고용규모별 가입사업장 통계
 - 1) 예술인만 (61.5%) 2) 1-4명 고용(18%) 3) 5-29명(13.9%) 4) 500명이상 (5.2%)
6. 기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유무
 - 1) 기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61.5%) 2) 예술인신규고용보험가입사업장 (37.7%)

1. 적용대상

A. 근로자가 아닌

-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저작권법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 예술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 그밖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B. [예술인복지법] 제 4조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업무및 과업의 내용, 시간 장소등 용역의 범위, 수익의 배분, 분쟁해결 등이 기록된 계약서
-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C.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 의무가입

A. 적용제외를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당연가입

B. 적용제외

1) 연령 - 65세 이상 신규가입자

2) 소득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다만, 단기예술인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대상임)

2. 고용보험가입

1. 사업자 -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 - 사용자는 예술인을 피보험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성립신고

1. 성립신고 - 최초 1회
2. 신고의무자 - 사업주(계약관계상 "용역대금" 을 지급하는 자)
3. 신고기한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4. 기존 근로자 고용사업자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별도 신고하며 예술인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별도 사업장번호가 부여된다.
5. 제출서류
 - A. 고용보험 보험관계 선립신고서(예술인종사사업장)
 - B.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 C. 예술인명부
6. 제출방법
 - A.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 직접방문, total.kcomwal.or.kr, www.4insure.or.kr 등
 이를 이용해 신고

적용 대상 예술인

<예술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예술인>

1. 예술인 중에서
2.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에서
3. 직접 예술활동을 수행한 사람 중에서
4. 계약시작일에 만65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5.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단기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6.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
(여러곳의 소득이 월평균 50만원이 넘으면 **직접신고 예술인**)

1. 피보험단위기간

1. 문화예술용역관련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
2. 문화예술용역관련계약 종료일 다음날 피보험자격 상실
(피보험단위기간 = 계약기간)
** 나중에 실업급여 계산할때 등장하는 중요개념

2. 피보험자격이중취득

1. 둘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 취득 가능
2. 예술인고용보험 + 일반고용보험
3.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1. 사업주가 의무 신고

1. 직접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신고
2.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사업 인 경우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3. 원수급인이 1개소일 경우 원수급인이 신고, 여럿일 경우 공공기관이 신고

2. 피보험자격 구분

- A. 일반예술인 -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 B. 단기예술인 -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

3. 신고기한

1.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발생시 익월 15일까지 신고.
 1. 일반예술인, 단기예술인 공히 익월 15까지 신고
 2. 예술인사업장 관리번호로 신고
 3. 예술인 직종 및 부과부호 입력

소득합산 직접 신고 예술인

1. 두 곳 이상의 계약으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넘으면 직접신고 가능
2. 취득일 -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는날
3. 상실일 -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인 기간의 마지막날 다음날
4. 신고서식 -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
5. 신고기한 - 50만원 이상의 기간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단, 50만원 이상이 되는 기간 종료이후는 신고불가
6. **기준보수 적용제외** - 이경우는 월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이라도 실제신고된 월평균보수 적용
7.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정산대상 제외 -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 정산 미대상

보험료 산정 및 부과

1.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1. 2021.7.1 이전은 총 1.6%, 이후는 총 1.4%
2. 사업주와 예술인 공히 50%씩 부담 (현재 각 0.7%)

2. 보험료 산정방식

1. 예술인의 보수총액 * 보험료율(현재 각 0.7%씩)
2. 보수총액이란
3. 계약상의 총 소득금액- 비과세액 - 경비
4. 일반적으로 총 소득금액에서 비과세액을 뺀 후에 거기에 80%를 곱하여 산정
5. 즉 경비를 20% 인정함
6. 예 : 총 소득금액 500만원

$$\text{경비} = 500\text{만원} * 20\% = 100\text{만원}$$

$$\text{보수총액}(400\text{만원}) = \text{총소득금액}(500\text{만원}) - \text{경비}(\text{총소득금액의 } 20\%, 100\text{만원})$$

보험료 산정 및 부과

1. 월별 보험료 산정 보수

1. 당해년도에 계약한 경우
 - 당해년도 지급예정 총 보수액(총 소득금액 아님) / 해당 노무제공 개월수
2. 전년도부터 계속 계약인 경우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노무제공 개월수

2. 산정사례

1. 21.7.1 - 21.11.30 (5개월) 총 소득액이 1,000만원 인 경우
 총 소득액 1,000만원에서 경비(200만원 차감)하여 총보수액(800만원)
 $\text{총보수액}(800\text{만원}) / 5 = \text{보험료산정보수}(160\text{만원})$
2. 2020.11.1 - 2021.6.1(8개월) 총 소득이 2,000만원을 매월 균등지급한 경우
 총 소득액 (2,000만원) - 경비(20%, 400만원) = 총보수 (1,600만원)
 2020년 보수 총액 = 400만원(2개월)
 보험료산정보수(200만원) = 2020년 총보수액(400만원) / 노무제공개월수

(2)

보험료 산정 및 부과

1.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기준보수는 80만원으로 산정.
2. 월평균소득 50만원 - 100만원까지는 무조건 기준보수는 80만원으로 산정함.
3. 기준보수가 80만원일 경우 보수(80만원) * 보험료율(1.4%) = 고용보험료 납부액(11,200원) 이 사업주가 납부할 총액이며
4. 이중에 0.7%인 5,700원은 예술인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함.
5. 계약후 분할지급방식과 상관없이(즉 매월지급 방식이던, 선금, 중도금, 잔금 지급방식이던) 총 지급액 / 계약개월수 = 월소득이며, 이 월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다.
6. 월 소득 * 80% = 월보수 이며, 이 월 보수가 80만원 이하이면 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1.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2. 사업주가 근로자인 피보험자를 10인 미만(즉 9인까지)으로 고용하고
3.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일 경우
4. 예술인 및 그 사업주에 대해서 각각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5.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지원
6. 신청방법
 1. 신규가입시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고용보험료 지원에 체크
 2. 전자신고 - www.4insure.or.kr
 3. 서면신고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후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 로
7. 지원제외 - 전년도 재산 6억이상,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

1. 수급요건

1. 실업상태일것 - 노무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2. 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것
3. 비자발적 이직일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아닐것)
 1. 소득감소일 경우
이직일 직전 3개월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동안 전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것.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5. 수급자격 제한 사유일 경우 단기예술인으로 90일 이상 종사했으면 대상임.

2. 지급수준

1.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이 되는 보수일액)
마지막 이직일 이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2.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현재 66,000원)
근로자는 하한액이 60,120원이나 예술인은 하한선이 없음.

1. 실업급여계산
2. 기초일액 = 신고월보수 80만원 * 12 = 960만원 / 360 = 26,667원
3. 구직급여일액 = 26,667 * 60% = 16,000원
4. 월구직급여 = 16,000 * 30 = 480,000원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 부지급,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는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 부지급

5.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6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1. 피보험단위기간산정

1. 월은 월단위.
2. 월미만은 일일로 계산해서 30으로 나눠서 산정
3. 단기에술인은 한달에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미만인 달의 일수를 합산하여 22로 나누어서 개월수 산정.
4. 예(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함)
 1. 1.21일 - 5.25일 = 5개월 4일. = 5개월 + 4일/30일 = 4.13개월
 2. 단기에술인의 경우 1월 12일 = 1개월, 2월 5일 = 5일, 3월 11일 = 1개월, 4월 10일 = 10일, 5월 15일 = 1개월, 6월 7일 = 7일
 (합산 1월,3월,5월은 1개월씩 총 3개월, 2월,4월.6월은 5 + 10 + 7 = 22일 / 22 = 1개월 총 4개월)

1. 예술가와 근로자 비교

	근로자	예술인
대상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대략 7개월 고용)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비대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단, 3개월이상 적용)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적용대상임)	문화예술용역계약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 (소득합산으로 50만원 이상이면 대상임)
보험요율	실업급여 1.6% 고용안정,직능 0.25% - 0.85%(사용자부담)	실업급여 1.4%
이직요건	비자발적이직(계약종료는 비자발적이직)	비자발적이직 (소득 감소일 경우 인정)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 66,000 하한액 60,120	상한액 66,000 하한 없음

출산전후급여

1. 수급요건

1.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것
2.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3.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 하지 않을것

2.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1.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2. 지급기간 : 출산전후를 합하여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중 소득활동 없는기간
3. 지급금액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

1.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이 인가해서 사무대행
 2. 전국에 약 5,000여개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
 3. 대부분이 세무사, 노무사 등
 4. 보험사무대행 약관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무료로 대행
 5.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무대행계약 등을 하지 않으면 무료 대행 안함.
-
6. 보험사무대행 업무
 1.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신고에 관한 사무
 2.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3.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4.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관한 사무
 5. 그밖에 법규에 따라 사용자가 신고해야 하는 업무

고용보험 사무대행 기관

1. 21.7월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으
로 승인
2. 고용보험사무대
행 시작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인가번호	2021025600	
사무대행기관	명칭	한국스마트협동조합03382서울 은평구 은평로 245(북변동) 3층 한국스마트협동조합
	대표자	서인형
	소재지	(03382) 서울 은평구 은평로 245 (북변동) 3층 한국스마트협동조합
보험사무의 내용	(고용)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산재) 산재보험에 관한 사무	
수임대상지역	고용: 서울, 인천 외 1	산재: 서울, 인천 외 1
보험사무 위탁처리 규약	승인	
그 밖의 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합니다.

-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고용·산재보험 관련 각종 신고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보이는 AFS(1588-0075, 휴대폰에서 자동연결)」로 팩스 수신 여부 및 서류접수 현황 조회 등의 업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7.07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



담당부서 연락처

1. 한국스마트협동조합 고용보험 담당 송수아 팀장

010-6463-3477 support@kosmart.org

2.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센터

TEL : 02-2097-9250

FAX : 0502-223-3203

서울 : 02-2097-9252 ~ 9256

경기 : 02-2097-9257 ~ 9259

그외 : 02-2097-9260 ~ 9262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용보험 안내창구 예술나무라운지
02-3668-0254 ~ 0255

감사합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

www.kosmart.org